

종립학교 종교교사 양성제도의 변천과 재교육

- 불교계 중등학교 교법사를 중심으로 -

김은영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요 약】

이 논문은 불교계 중등학교 교법사를 중심 사례로 종교교사 교원양성과정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교교사 양성제도 성립의 동기를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시와 국가교육과정 내 종교교육의 편제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종교교사 양성제도는 종파별 양성과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국가제도를 통해 전문화되고 통일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불교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종교계 설립 학교의 종교교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불교계 종교교사(교법사) 양성과정의 특수성과 모든 종파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보편적인 현상을 비교하였다. 향후 공교육에서 보편적 인성교육에 종교교과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종교교사 양성에 있어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 뿐 아니라, 임용 후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종교교사, 종교교육, 종교교과, 교원양성제도, 종립학교, 교법사

I. 서론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듯이 그 중요성은 의심할 바 없다.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인 교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무척 크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직업적 책임의 막중함을 나타낸다. 때문에 교원양성제도(敎員養成制度)가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는 개인의 신앙이 아닌 공적 영역의 종교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인격교육적 가치요소를 담보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교사는 다른 교과보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교사와 관련한 양성과정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제도화된 종교교육 역사가 오래지 않은 것과 비례하여 종교교사가 활동한 시간도 길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변천과 관련하여 종교교사양성제도가 언급된 연구들이 있다.¹⁾ 그러나 종교교사라는 독립적 주제에 대해 역사적 흐름부터 짚어본 심도 깊은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종교교사양성제도에 대한 조망을 통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종교교육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불교계 교법사(校法師)를 중심 사례로 하여 그 특수성과 전체 종교교사양성과정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교교사 양성제도가 성립하게 된 동기를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태동과 국가교육과정을 통하여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교사 양성제도의 변천과 발전에 대하여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교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통하여, 한국 사회 종립(宗立) 학교의 종교교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종파별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해당 종교에서만 드러나

1) 김철주·고병철, 「종교교사의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21(2) (충북: 한국교원교육학회, 2004). ; 김귀성, 「현행 종교과 교사 양성의 실태와 개선 방안」, 『종교교육학연구』27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박범석, 「종교과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영역 상세화 연구」, 『종교교육학연구』27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8). ; 손원영, 「한국 중등학교 종교교사 자격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연구』27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8). ; 양은용, 「종교교사의 자질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27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8). ; 김용표 외,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표시과목 종교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연구보고 CRE 2008-6-15)』, (서울: 한국교육평가원·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다종교사회와 종교지도자 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등.

는 특수한 갈등이 아니며,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현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려 한다.

본고에 앞서, 명료한 논의를 위하여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선행하고자 한다. 종교교사란 중등과정에서 종교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교원자격증에 종교가 표시과목인 교사를 종교교원이라고 표현하거나 일반적인 지칭으로서 종교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종교교사로 통일하였다. 교목(校牧), 성무감(聖務監), 교법사 등의 호칭은 관련한 종파의 특수한 현상을 서술할 때만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양성제도는 교육법을 포함하여 종교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립된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

II. 종교교사 양성제도 성립의 동기

교원양성제도는 정식으로 교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용 이전의 교육이다. 교직을 한 사회의 전문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원양성과정 역시 중요시되어야 한다. 지식적 측면에서의 전문성 향상 뿐 아니라 직업특수성 측면의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소명까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교원양성제도의 시작은 구한말에 시작되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를 거치면서 현대의 교원양성기관 및 과정이 정리된다. 교육대학(敎育大學), 사범대학(師範大學), 임시교원양성소(臨時敎員養成所), 교직과정(敎職課程), 한국교원대학교(韓國敎員大學校), 그리고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교육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교원양성제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종교교사를 육성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기와 그 목적과 방법은 어떠하였는지 상세히 밝혀보도록 하겠다.

1.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태동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정식으로 태동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國家敎育課程)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과정이란 국가가 공교육(學敎敎育)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공식적으로 공표한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종교교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국가 차원에서 종교교육에 기대하는 바와 그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종교교사 교

원양성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종교교육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며, 해방 이후 중립학교 별로 종교교육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가 정식으로 언급된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19호, 1963.2.15.) 이전에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문제시 되거나 주요 사회 관심사로 등장하지 않았다. 개별 학교나 종교계 학교법인의 사정과 의지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개입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와 제3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25호(1973.8.31.), 제350호(1974.12.31)) 개정 시기의 학교교육 변화는 종교교육의 여러 문제를 표면화 시켰다. 교사자격 검정시스템과 교과용도서 규정이 정비되며, 학교 내 무자격 종교교사와 자체제작 종교교과서를 재단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났다. 특히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고교 입학 추천 배정제도 등으로 학생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종교계 학교로의 진학은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 문제를 발생시켰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정식으로 가능하게 된 시기는 제4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422호, 1981.12.31.) 당시였는데, 종교라는 교과명이 최초로 자유선택교과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종교교과가 국가교육과정에 정식으로 편제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종교교육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국가교육과정 내 종교교육 편제

제4차 교육과정(1981.12.31.~1987.3.30.)은 국가교육과정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각급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안 개발을 담당하면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중립학교의 종교교육도 이전에 비해 좀 더 공적 영역으로 편입된 시기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종교교과는 논리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과 함께 자유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 또한 자유선택과목의 시간 단위도 0-8단위까지 확대되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였다.²⁾ 그러나 편제와 시간 배당만 있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규정, 그리고 교사의 자격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종교교사의 경우도 대부분 기존의 성직자들로 유지되었으며,

2)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별책4(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pp.6-7.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있었다.³⁾ 『종교』 교과서는 비록 집필 기준은 없었으나 문교부 인정도서로 승인되어 공적인 성격을 인정받았다.

제5차 교육과정(1987.3.31.~1992.6.29.)의 종교교과 관련한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중학교의 경우 여전히 자유선택교과가 유지되어 학교장의 재량으로 종교 관련 교과를 개설할 수 있었다.⁴⁾ 고등학교의 경우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의 ‘자유선택과목’의 명칭을 ‘교양선택교과’로 바꾸고 과목도 별도로 독립시켰다. 또한 ‘종교’교과를 실시할 경우 복수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세칙이 변경되었다. 교과시간도 2단위로 고정시키면서,⁵⁾ 종교계 사학에서는 종교교과 개설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6.30.~1997.12.29.)은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더불어 해설서(고등학교 총론)가 따로 발행되면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철학적이고 실용적인 의미를 정립한 시기였고, 종교교과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종교교과가 따로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교과로서 운영할 수 있었다.⁶⁾ 고등학교의 경우, 종교교과가 속해 있는 교양선택교과 전체의 설정배경과 방향이 정의되었다. 개별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교과과정도 최초로 마련되면서 종교교과에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지침 등이 최초로 제공되었다. 특정 종교에 관련한 항목 외에 종교학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종교교과가 특정 종교의 교리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⁷⁾

제7차 교육과정(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의 종교교과 관련 제도와 내용은 이전 시기의 틀을 유지하였다. 이후 제7차 교육과정 개정(2007.2.28~2009.12.23.)은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이 고시되어 마련되었다. 교양과목에는 ‘환경’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생활’이라는 명칭이 추가되었다. ‘과목간의 위계성을 확보하고,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교양과목을 생활과 관련된 분야임을 부각시키려는 취지였다. ‘종교’ 교과는 ‘생활과 종교’로 개칭되었다.

3) 박삼근, 서성필, 이금옥, 조경원, 홍미애, 유순화, 김수미, 김화경,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교육연구』4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회, 1973), 27쪽.

4) 문교부, 『중학교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7-7호(1987. 3. 31.))』, p.6.

5)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총론』(1999), pp.266-284.

6)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p.4; p.6.

7) 교육부,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교양』(2001), p.127.

사실상 현재 국가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상태와 다름없고, 교양과목에 속해 있는 종교 교과도 여러 차례 개정과 재개정을 거쳤다. ‘종교’는 ‘생활과 종교’를 거쳐 ‘종교학’으로 교과명이 개정되어 2015년도부터 적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파교육이나 신앙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객관적 학문으로서 종교를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양교육’과 ‘신앙교육’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성격이 공존하는 제6차 교육과정 이전의 기본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Ⅲ. 종교교사 양성제도의 발전 과정

국가 차원의 교원의 양성은 수요에 의해 그 목적과 양성방향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교육과정에 종교교육이 편제되고 정식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시됨에 따라 정식 교사도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국가교육과정의 종교교과 편제 이전과 이후에 종교교사양성과정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종파별 자체 양성과정의 시작

1950~70년 시기는 대한민국의 법이 정비되고, 사회가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로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1966년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무자격 교원의 해임 조치(문교행 1040-507, 문교행 1040-659)’ 공문을 각 학교에 통보했다.⁸⁾ 무자격 교원은 종교교과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특히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제3차 교육과정까지 교육법에 시행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종교계 사학들은 설립 이념에 따라 종교수업의 운영을 원했다. 종교수업들은 성경, 교리, 교학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되었고, 이를 가르치기 위한 교원도 필요했다. 당시 종교교육의 교사는 교목, 수녀, 신부, 교법사 등으로 대개가 종파나 종단의 대학에서 종교 관련 전공을 하거나 종교 활동을 해본 경험자들로 구성되었다.⁹⁾ 정식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교사들도 있었던 셈이다.

8) 김귀성 외, 『국내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종교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77쪽.

9)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2), 214쪽.

이 시기의 종교교사에 대한 연구는 관련 조사에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을 뿐이라¹⁰⁾ 명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973년 연구에 따르면, 종교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시내 개신교(5개교)·천주교(2개교)·불교(2개교) 계통의 중학교 9개교를 대상으로 삼아 랜덤샘플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 유일한 연구이기에 이를 통하여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개신교계 종교교사는 대개가 신학대학 출신인 목사와 전도사 혹은 기독교 학과나 신학과 졸업생이었다.¹¹⁾ 출신 학교에 사범대학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정식 교원양성과정을 거칠 수 없었을 것이다. 천주교계의 경우 주로 신부와 수녀가 성무감 역할을 하였다.¹²⁾ 그들의 출신학과가 다양했다는 점에서 교원자격증이 있더라도 종교 관련 전공이 아니었음을 가늠할 수 있고, 해당 조사만으로는 교원자격증 유무도 확인하기 어렵다. 불교계의 경우는 불교학과나 불교철학과¹³⁾ 출신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¹⁴⁾ 당시 연구(1973) 이전에 불교계 내부적으로 임용시험이(1968) 있었던 것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68년 2월 불교종립학원연합회(현재 불교교육연합회)가 주관한 ‘교법사 자격시험’이 시작되었다. 개별 학교가 아닌 종파 차원에서 종교교사 임용시험제도가 정립된 것이다. 시험대상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자로서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직 중등학교 교사였다. 즉 정식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¹⁵⁾ 시험방식은 3과목(불교 교리, 불교사, 영서)에 대한 필답고사와 면접고사였다. 당시 응시한 20여 명 중 6명만 시험을 통과하여 제1기 교법사로 배출되었다. 그리고 1968년 3월 1일부터 학교 발령을 내면서 서울 지역에서 교법사제도와 불교교육활동이 공식화되었다.¹⁶⁾

불교계의 자체 양성제도 사례를 통하여 다른 종교계 역시 종파별로 종교교사 임용

10) 박삼근, 서성필, 이금옥, 조경원, 홍미애, 유순화, 김수미, 김화경,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교육연구』4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회, 1973).

11) 위의 글, 27쪽.

12) 위의 글, 27쪽.

13) 해당 연구에는 불교계 종교교사가 불교학과나 불교철학과 출신이라고 기록되어있지만, 당시 전국 어느 대학에도 불교철학과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14) 위의 글, 27쪽.

15) 교법사 제도의 초기 시절의 교원 자격증을 획득하는 경로는 지금과 차이가 있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다니며 사범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사회(윤리)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신청하여 중등학교 준교사 ‘일반사회(윤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원주 『善知識』,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2005), 23쪽.

16) 박명순, 『善知識』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2005), 26쪽.

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교목사나 성무감 등의 명칭이 사용된 것이 그 근거 중 하나이다.

2. 종교교사 양성 국가제도 편입시기

제 4차 교육과정(1981.12.31.~1987.3.30)에서 ‘자유선택과목(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 등)’을 근거로 학교장 재량으로 종교교과가 각급 중등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었다. 종교교과의 정식 시행은 종교교사 자격에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는데, 교원 자격증에 ‘교육’의 하위 단위로 ‘종교’가 명시되기 시작하였다.¹⁷⁾ 하지만 종교교사양성과 관련한 법령은 정비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식 양성과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제5차 교육과정(1987.3.31.~1992.6.29.)에서야 종교교사를 위한 자격연수가 임시교원양성소(臨時敎員養成所)의¹⁸⁾ 형태로 최초로 개설되었다. 중등학교 현장에서 종교와 관련한 교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육법상 무자격 교사였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불교계 교법사들은 이미 정식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이었으나, 종교교사로서의 전문직위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 1990년에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교육학과가 연합하여 종교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약 90~100여 명의 교사가 종교교사 자격증을 받았는데,¹⁹⁾ 수강생들은 대부분 개신교 목사들이었고, 일부 불교계 승려들이 있었다고 한다.²⁰⁾

더불어 이 시기에는 교사자격증의 ‘종교’ 표기 방식이 달라졌다.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해 1988년 9월 기존의 ‘교육(교육학·심리·행정·시청각·공학·종교)’의 하위과목으로 부기되던 형태에서 중등교사 교원자격증 상 표시과목이 별도로 독립되어 ‘종교’ 과목으로 분리된다.²¹⁾ 종교가 독립교과가 되면서 다른 교과 교사처럼 종교교사라는 표현이 공식화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6.30.~1997.12.29.)에서도 서울대 종교학과와 교육학과에서 합

17)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 1983.10.5. 문교부령 제519호) 제1장 제2조 ②항 관련 별표 1.: ‘중등학교·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는 ‘교육(교육학·심리·행정·시청각·공학·종교)’ 형태로 종교가 교사자격증의 담당과목명으로 신설되었다.

18)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3조(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19)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서울: 교육부, 2001), 126쪽 ; 고병철, 앞의 책, 185쪽.

20) 강돈구, 「한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 『종교교육 비교연구』(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4쪽.

21)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 1988.9.27. 문교부령 제567호) 제1장 제2조 ②항 관련 별표 1.

동으로 개설한 종교교사 자격연수는 지속되어 1995년 제2차 연구과정에서 약 50명의 무자격 종교교사가 종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²²⁾ 2000년 제3차 연수과정에는 약 120명이 참여하였으며, 객관적인 종교학 수업이 강화되어 총 40학점의 종교학 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었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연수자들은 교직 과목 18학점을 추가로 수강해야 했다. 2004년 한신대학교에서 제4차 종교교사 연수과정이 개설되었고, 2005년도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종교교사 임시 양성’ 과정이 개설되었다.²³⁾

3. 종교교사 양성과정의 전문화 및 통일화

앞서 기술한 종교교사 교원양성제도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종교교사의 양성 교육기관/과정

기관/과정 구분	비고
서울대 임시교원양성소: 종교교사연구과정 1차(1990년)	- 교육부 개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를 근거로 종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부여 - 90여 명 수료
서울대 임시교원양성소: 종교교사연구과정 2차(1995년)	- 서울대 종교학과/교육학과 연합 - 50여 명 수료
서울대 임시교원양성소: 종교교사연구과정 3차(2000~1년)	- 교육부 개설/서울대 사범대학 운영 - 1차/2차 수료생: 새로 개설된 강화된 전공 ‘종교학’ 과목을 중 40학점 이상 추가 이수 - 수업구성: 전공과목 10과목(40학점), 교직과목(20학점)
종교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정(한신대학교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2000~1년)	- 대상: 종교2급 정교사, 중등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경기도 교육감의 추천 - 교육연수원령 7조: 교양 24시간, 교직 28시간, 전공 131시간, 기타 3시간 - 교장/교감 등 관리직 승진이 가능 - 수료: 개신교계 20명, 천주교계 7명, 불교계 3명 등

2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서울: 교육부, 2001), 126쪽 ; 고병철, 앞의 책, 188쪽.

23)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142-143쪽.

종교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정(서울대학교 부설 중등교육 연수원, 2001~2년)	- 수료: 총 32명 -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중등학교 2급 정교사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게 중등학교 1급 정교사의 자격증을, ‘중등학교 1급정교사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게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그리고 ‘중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게 중등학교 교장자격증을 부여한다.
중등 1급 자격연수(종교·철학) 과정 (강남대학교 교육연수원, 2010년)	- 인원: 39명 - 시간: 180시간 - 일수: 30일
종교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정(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2011년)	- 수료: 13명 - 관계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프로그램구성: 교양 16시간, 교직 22시간, 통합전공 82시간, 표시과목 전공 60시간, 등록 및 개강식, 수료식 2시간 등 총 182시간
현재: 사범대학(사범대 교육학과(종교교직과목) 이수 / 종교 관련학과 비사범대교직과정 / 교육대학원(종교교육학과)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등에 의거

종교교사 양성과정은 임시교원양성소 시기를 거친 후, 타 교과목과 같은 형식으로 교직이수과정이 대학에 개설되었다. 종교교사 양성과정이 보다 전문화된 것이다.

2008년에는 한국교육평가원과 한국종교교육학회가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 후보자선정경쟁시험 표시과목 종교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연구보고 CRE 2008-6-15)’를 발표한다. 국가고시인 교원임용시험으로 종교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가문항 및 배점 등의 기준을 개발한 것이다. 양성과정 전문화에 이어 임용고시의 표준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종교교사 지망자가 중등교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일반 사범대학의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전공과목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종교교사 자격 취득에 관련된 전공(기본이수과목 포함)과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다.

둘째로 종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학과에 입학하여 전공과목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교직관련 수업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과

정이며, 다수의 자격자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 종교 관련 전공을 한 학생이 교육대학원의 종교교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다. 이는 학부 때 종교 관련 전공을 하면서도 교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나 출신학교에 사범대학이 없어 교직을 이수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대학별로 개설 현황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성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부 과정 종교 관련 전공자의 사범대 교직과정 이수에 대한 상세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 해당 연구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현행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²⁴⁾ 더불어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별 및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에서 대체이수 사례 때문에 양성과정에서 있어 종교학적인 관점보다는 종파별 시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현상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²⁵⁾ 예를 들어, ‘종교교육론’ 대신 ‘기독교교육학’, ‘종교심리학’ 대신 ‘선상담심리’ 등과 같이 수업이 개설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시행 2014.9.2] [교육부고시 제2014-48호, 2014.9.2., 전부개정]〉에 따라²⁶⁾ 2015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법에 정한 그대로 개설된 기본이수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전국의 모든 종교교사 교원양성과정이 통일된 것이다. 당장 학교현장에서 눈

24) 김귀성, 「현행 종교과 교사 양성의 실태와 개선 방안」, 『종교교육학연구』27,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pp.14-15.

25) 김귀성, 「현행 종교과 교사 양성의 실태와 개선 방안」, 『종교교육학연구』27,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p.18.; 김귀성 외, 『국내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종교교양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12, p.51.; 김철주·고병철, 「종교교사의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한국교원교육학회, 2004 p.242.

26)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 교원 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 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과 명칭을 달리하여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

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종교학적 관점으로 교육받은 교원들이 양성되어 교육현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불교계 종교교사 양성과정의 특수성

1. 신분적 특수성

교법사(校法師)는²⁷⁾ 교사(교수) 자격을 가지고 전국의 불교계 중립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교화 활동을 통하여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1940년대부터 보문중·고, 능인중·고, 해동중·고, 정광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법사 제도를 실시해온 것이 그 시초이다.²⁸⁾ 이후 1968년 2월 20일 불교종립학원연합회 주관으로 ‘교법사 자격시험’이 시작되며 그 지위와 자격이 공식적으로 정의되었다. 당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자들은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이 있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출신 졸업생들이었다.²⁹⁾ 필기고사와 면접을 통하여 6명이 합격하였고,³⁰⁾ 교법사 자격증을 수여한 것이 교법사 양성제도의 효시였다.

1969년 1월 불교종립학원연합회의 주최로 불교종립학교 교법사 연수회가 개최되고, 같은 자리에서 전국교법사회(초대 회장 김윤주, 해동고 교법사)가 창립되면서 교법사들의 연합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5년 9월 8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명의의 포교사 직할교구 근무를 명받았으며, 1984년 7월 15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전법사 품수증을 수여 받은 기록도 있다.³¹⁾ 1991년 3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원장 서의현)에서 교법사 자격인정서를 받고 전국교법사회의 명칭을 전국교법사단으로 바꾸

27) 불교에서 법사(法師, dharma-bhanaka)는 전통적으로 불법(佛法)에 정통하고 교법(敎法)의 스승이 되는 모범적인 승려를 의미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재가신도 중 포교를 전문으로 하는 지도자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군법사(軍法師)와 교법사(校法師)가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총무원법에 그 역할을 명시하여 정의하고 있다.

28) 박영동, 「종립학교 교육과 불교학과 동문의 역할」, 『불교학과 창설 110주년 기념제』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불교학과동문회, 2016), 63쪽.; 김재호, 「교법사단의 발자취」, 『전국교법사단 창단 제3주년 기념 전국불교종립학교 교화자료집』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4), 8쪽.

29) 이원주, 앞의 글, 23쪽.

30) 동대부중·고(권기중, 김봉식), 명성여중·고(박명순), 대동중·상고(김재호, 서윤길), 광동중·산림고(강복영) 등.

31) 박영동, 「교법사의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선지식』(서울: 전국교법사단, 2005), 154쪽.

고 창단하여³²⁾ 종단과의 유대와 교법사들의 단체활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교법사는 현재 국가 교육법상으로는 전체 교사의 정원 속에 포함된 일반 교사의 신분이다.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는 종교의례의 집전을 관장하는 성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중헌 법령에 따라 교법사의 신분을 규정하며,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³³⁾ 정관에 교법사 제도를 명시한 학교법인은 동국대학교와 광동학원 등이 있다.³⁴⁾

종교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종교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법사라는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다. 초기의 교법사는 불교를 가르치는 교사(敎法師)로 인식되어³⁵⁾ 성직자보다는 교사라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 했다. 당시 교법사들의 건의로 1974년부터 ‘校法師’로 호칭의 정의를 달리하게 되며, 학교에 근무하는 법사(학교법사)로 성직자라는 지위를 강조한다.³⁶⁾

앞서 언급한 다양한 활동 역시 성직자와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법사라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³⁷⁾ 교학수업(불교)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타 교과 교사나 학생들의 의문으로 인하여 교법사의 지위나 정체성에도 혼란이 있었다.³⁸⁾ 이런 상황에서도 교법사들은 학교를 넘어 불교계 전체에 새로운 포교 모델을 선보인다. 불교학생회나 불교합창단 같은 조직이 그 사례이다.³⁹⁾

여전히 교법사들은 교육법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일반교원과 같은 처지에 준한다. 반면 성직자로서 종교계 학교법인, 교장·교감과 같은 관리자, 타 교과 교사,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일반 교사와는 다른 위상에게 기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교과 수업 지도 외에도 봉축행사, 신행활동 등의 역할도 일반 교사와는 다른 점이다. 더하여 불교계 지도자로서 교사불자연합회와 같은 대외 포교 등 교외 활동에 대한 역할도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32) 김남일, 「전국 교법사단의 역사와 발자취」, 『선지식』(서울: 전국교법사단, 2005), 10쪽.

33)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법〉 제3조

34)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시행세칙 제6장 제19조 2항; 학교법인 광동학원 정관 제7장 제2절 제86조 등

35) 이원주, 앞의 글, 25쪽.; 박명순, 앞의 글, 26쪽.

36) 이원주, 위의 글, 25쪽.

37) 김봉식, 「개혁 법사의 애로와 기쁨」, 『선지식』(서울: 전국교법사단, 2005), 29쪽.

38) 박명순, 앞의 글, 26쪽.

39) 김봉식, 앞의 글, 30쪽.; 이원주, 앞의 글, 24쪽.

2. 양성과정의 특수성

앞서 살펴보았듯 교법사 양성제도의 역사적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940년 중반부터 각 학교법인의 의지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초기 단계이다. 둘째, 1960년대 후반에 기초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며, 자생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84년부터 신분과 단체가 정식으로 종단에 편입하며 완전한 제도화를 이루게 된다.

특히 불교계 교법사는 두 단계의 양성과정을 거친다. 교사로서 인정받기 위한 공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성직자로 인정받기 위한 종단의 품수 과정이 그것이다. 이 과정과 국가 교원양성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비교하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불교계의 교법사는 실시 초기부터 교원자격증이 있는 정식 교사가 활동을 하였다.⁴⁰⁾ 불교계는 해방 이후 학교 설립이 이어졌고, 개별 학교 단위로 불교를 가르치는 교사를 임용하여 불교교육을 진행하였다.⁴¹⁾ 초기의 교법사들은 타 교과의 교원이었으나 불교 교화에 뜻을 두고 학교를 설립하거나 불교계 학교에 부임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하며, 종교교과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후 불교계 학교 간 교류와 종교교육 통일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불교종립학원연합회에서 1968년 ‘교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종단 내 임용시험제도가 생겨난다. 합격한 사람들만 정식 교법사 자격증을 받고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교법사가 그 역할과 지위를 인정받아 종단의 법령에 그 역할이 기재되면서, 현재는 이 시험은 운영되지 않으며 품수과정과 자격증 발행 주체 역시 종단으로 바뀌게 된다.

둘째, 국가의 종교교사양성제도의 변화는 교법사의 역할이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종단 자체양성과정을 거쳐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무자격 교원이 없었기에 임시교원양성소나 중등교육연수원의 교육을 통해 기존의 교법사들이 정식교원자격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

즉, 국가의 교원양성과정과 불교계 교법사 양성과정의 각각의 변화는 서로 큰 관련 없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종교교사 양성과정이 무자격 교사를 다수 보유

40)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선지식: 전국교법사단지 2005 창간호』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2005), 36~44쪽.

41) 박영동, 「종립학교 교육과 불교학과 동문의 역할」 『불교학과 창설 110주년 기념제』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불교학과동문회, 2016), 63쪽.; 김재호, 「교법사단의 발자취」 『전국교법사단 창단 제3주년 기념 전국불교종립학교 교화자료집』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4), 8쪽.

하고 있던 타 종파에 미친 영향에 비한다면, 적어도 불교계에는 형식적으로 유의미한 제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셋째, 국가의 양성제도의 전문화와 통일화는 교육과정 내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대학의 교원양성제도 수료 이후 수여받은 교원자격증의 표시 교과명을 ‘사회(윤리)’에서 ‘종교’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 종교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도 변화하였다. 교법사 양성의 주요기관인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전공 교수가 종교학을 가르쳤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종교학박사가 양성 과정을 담당하며 수업의 질적 변화가 따랐다.

즉, 국가의 제도 변화가 불교계 자체 양성과정에 형식적인 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지만, 그 내용에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윤리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되어 학교현장에 있던 교법사들은 초기 개설된 임시교원양성소 과정을 통해 종교학 일반에 대한 심화교육과 다원주의에 대하여 학습하면서 진일보한 교원이 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또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이 종교로 변화한 뒤에는 대학의 이수과목과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세대의 교원을 배출하였다.

3. 교육현장의 특수성

현재 활동하는 교법사들의 자격은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과정도 각각 상이하다.

첫째로, 임시중등교원양성소 수료생, 대학교 학부과정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종교교육전공 등의 과정을 통해 종교교과 중등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이다. 또한 임용 후에도 종단 자체 양성과정을 거쳐야 교사에서 교법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의 교법사 품수식을 거쳐야 완료된다.

다음으로 타교과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법사도 존재한다.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5차 교육과정부터 발행된 ‘종교’과 교원자격증이 정식으로 발급되기 이전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윤리’ 등 인접교과 교원자격증을 받았고, 그 중 불교계 사학의 교법사로 재직하게 된 경우이다. 이 중 임시교원양성소를 수료하여 종교과 교원자격증까지 취득한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이외에 주로 학급수가 적은 도서지역 학교에서 종교와 같이 수업 단위가 작은 교과의

교사를 단독으로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 중인 타교과 교사에게 교법사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불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적 소양이 깊은 타 교과 담당 교사를 선발하여 일정한 교육을 거쳐 품수식을 통해 자격을 수여한다. 타교과 교사이지만 불교계 사학 내에서는 교법사라는 종교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다양한 양성과정을 거친 교법사들이 현재에도 학교현장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정식 교원자격증 취득과 임용 이후 다시 한 번 중단 자체 양성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와 성직자 간의 모호한 경계가 되어 교육현장에서 나타난다. 종교교육에 있어서 교사로서 교육하는 것과 성직자로서 교육하는 것에는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특수성으로 드러난다. 또한 개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정식으로 종교교과가 운영되는 곳과 불교학생회 등 특별활동만 운영되는 등 종교교육의 형태도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종교과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과수업을 하는 경우와 타교과 교사로서 실행활동만 담당하는 경우 사이의 경험 차이가 축적되면, 그 전문성과 교육방향에도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재직 형태가 안정적인 직업의 특성과 학교운영방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론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에 대하여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교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종교교과가 인성과 윤리교육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면, 종교교사의 역할과 양성과정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논의의 진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종교교사는 초기에는 각 종교와 종파 별로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채용하여 종교수업을 운영했으나, 제4차 교육과정 부터 종교교과가 정식으로 국가교육과정에 편제되면서 정식 종교교사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이후 임시교원양성소를 통해 종교교사를 위한 교원양성제도가 최초로 시행되고, 학교 현장의 무자격 교사들이 정식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알 수 있었다. 이후 교원양성제도는 관계법령 정비에 따라 대학의 종교 관련 전공자들의 교직과정 이수로 진행되며, 그 과정이 전문화되고 통일화된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제도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성직자 사이의 신분

적인 특수성이 교육적 특수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불교계 교법사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수성은 이미 교단별 자체 양성제도가 형성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제도화 그 자체에 머무른 수준에서 국가의 법령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웃종교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교사와 성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문제는 종파를 넘어 모든 종교교사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종교교사 양성과정 제도자체가 국가교육과정의 종교교과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과목설치의 법률적 모호성과 종교교육 내용의 모호성, 그리고 종교교육 현장에서 직면하는 모호성인데,⁴²⁾ 이러한 모호성은 교원양성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도의 개선이 현장으로 이어지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현실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대학의 교직이수 과정은 국가의 교육법에 의거해야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종파별 양성과정 역시 이미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종립학교에 채용이 되었을 때 수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원양성제도와 연계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양성제도가 학교 현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임용 이후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현재 활동 중인 종교교사들의 양성과정의 다양성까지 고려하면, 종교교육의 균등한 질을 유지하기 위한 현직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극대화된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 수요가 줄어드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우수 교원의 확보보다는 현직 종교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종교교사를 위한 재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본고에서는 지금껏 살펴보았던 불교계 교법사의 이중적 지위, 종교교사와 성직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직자로서 종교교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성직자를 겸하고 있는 종교교사의 역할에 대한 현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매년 실시되고 있는 종파별 종교교사 연수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학교법인과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종교교사로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시 개정 상태와 다른없는 국가교육과정의 종교교과 변화와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교육과정에 개정될 때마다 모든 교과교사가 관련한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소략한

42) 정진홍,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1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5쪽.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교교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종교교사들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사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해당 교육과정을 범종교적 합의를 통해 구성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의 방향은 교양과목으로서 객관적 종교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의 종교교사 양성제도의 내용은 종교학과 교육학 일반에 대한 포괄적 지식이 가미된 종파별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국가교육과정의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종교학 지식에 대한 전문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교전통을 아우르는 재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2015교육과정의 종교학 교과서 개발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중등 교원연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러한 재교육은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직무연수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⁴³⁾

종교교사 양성과정의 배경과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재교육과정을 통해 종교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학교현장의 종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662호 일부개정 2013. 07. 15.)〉 제6조 (연수의 종류와 과정). 직무연수란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교원평가 등과 관련이 있기에 모든 교사들이 연 6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돈구, 「한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 『종교교육 비교연구』,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서울: 문화관광부, 2005.
-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2.
- 고진호, 「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13,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곽삼근, 서성필, 이금옥, 조경원, 홍미애, 유순화, 김수미, 김화경,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교육연구』4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회, 1973).
- 김귀성 외, 『국내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종교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김귀성, 「현행 종교과 교사 양성의 실태와 개선 방안」 『종교교육학연구』27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 김남일, 『교법사의 구도와 전법활동 자료집』,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2016.
- 김용표, 「불교적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 『종교교육학연구』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 김용표, “The Present Actualization of Buddha-Nature in Buddhist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5, 2005.
- 김용표 외,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표시과목 종교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연구보고 CRE 2008-6-15)』, 서울: 한국교육평가원 · 한국종교교육학회.
- 김용표, 『포스트모던시대와 불교와 종교교육』, 서울: 정우서적, 2010.
- 김재호, 「교법사단의 발자취」 『전국교법사단 창단 제3주년 기념 전국불교종립학교 교화자료집』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4).
- 김철주 · 고병철, 「종교교사의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충북: 한국교원교육학회, 2004).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선지식: 전국교법사단지 2005 창간호』,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2005.
- 박범석, 「종교과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영역 상세화 연구」 『종교교육학연구』27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8).

- 박선영, 「교육애의 본질과 발현-불교의 자비관에 입각하여」 『불교학보』15 (서울: 불교문화연구원, 1978).
- 박영동, 「중립학교 교육과 불교학과 동문의 역할」 『불교학과 창설 110주년 기념제』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 불교학과동문회, 2016).
- 손원영, 「한국 중등학교 종교교사 자격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연구』27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8).
-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 양은용, 「종교교사의 자질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27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8).
- 유봉호 · 김용자, 『한국 근/현대 중등교육 100년사』, 서울: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1988.
- 윤재근, 「중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34 (서울: 종교교육학회, 2010).
- 이재인, 「종교교사 임용 시험을 위한 논술형 및 수업능력 평가 도구의 개발」 『종교교육학연구』27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8).
- 이진구 역, 『인격의 형성과 교육』, 서울: 원미사, 1997.
- 임고운, 「종교교사들의 종교교육관과 종교수업운영 실태 분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영희,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 서울: 해안, 1999.
- 정진홍,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1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다종교사회와 종교지도자 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 First Amendment Center, *A Teacher's Guide to Religion in the Public Schools*, Nashville: First Amendment Center, 1999.
- Harvard Divinity School, "Program in Religious Studies Education," <http://www.hds.harvard.edu/prse/>.
- The AAR Religions in the Schools Task Force, "Guideline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s K-12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2010.

원고접수일: 2017년 11월 8일 심사일: 2017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27일

연구자소개: 김은영

① 전공: 불교학 / 소속: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종교학, 불교교육, 응용불교

③ 주요논저: 「국가교육과정 변천과 불교종립학교 종교 교과서」(『한국불교학』 72, 2014),
『불교 종립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가교육과정 변천
과 ‘종교학’ 교육방법을 중심으로』(서울: 동국대학교 일단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대한불교조계종의 전환기 포교전략: 현황과 방향」(『한
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3(2), 2017) 등

④ E-mail : tara@dongguk.edu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er Training System of “Subject of Religion”
and Its Transition

- Focused on Secondary Schools Established by Buddhism -

Eun-Young Kim

Dongguk University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the transition and current condition on the teacher training system of “subject of religion.”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tivation of establishing religious teacher training system in religious education at school and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Second, the system of religious teacher training started with the cultiv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denomination, and it was specialized and unified through the national system. In this context, it is confirmed that the religious aspect of Buddhist religious teacher training and the specificity of education field are universal problems that arise in religious teachers of all mission schools.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training of religious teachers is needed not only to acquire teacher certification but also to reinforce professionalism through reeducation. It would be positive and pluralistic effects on religious education at the mission school.

Key words: Religion teachers, Religious Education, Subject of Religion, Teacher Training System, Mission School, Dharma teacher of School